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'21.7.29.(목)석간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담 당 자	윤 송 이 사무관 (02-2100-2983)	

제 목 :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을 개정합니다.

-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('21.7.29. ~ '21.9.7.)

1 개요

- 상호금융정책협의회('20.12월)에서 논의한 “1단계 규제차이 해소 방안” 후속조치로 「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」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('21.4.5.~'21.5.17.)하였고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(규제심사 중)입니다.

<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>

1. 경영건전성 기준 중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항목 추가
 - ① (업종별 여신한도 규제)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대출 등에 대해서는 대출 등 총액의 70%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
 - ② (유동성비율 규제)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
2. 상환준비금 제도 개선
 -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%에서 80%로 상향 조정

- 이에 따라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도 함께 진행하여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*하고,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

* 신협법(§83조의3)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,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

- 따라서 이를 위해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하였습니다.

2 감독규정 개정사항

1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세부적으로 규정 (§16조의8 신설)

-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,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대출(대출+어음할인)의 각각 30% 이하로 제한하고,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% 이하로 제한(현재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음)

※ (통계) ① 건설업 대출(조원): ('16) 19.4 → ('18말) 52.9 → ('19말) 64.2 → ('20말) 79.1(16년대비 59.7조원 증가, 308%), ② 총여신 중 부동산업·건설업 비중(%): ('16말) 6.7 → ('18말) 15.2 → ('19말) 17.6 → ('20말) 19.7

상호금융업권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방안

- (A): 총대출의 30%
- 건설업(B): 총대출의 30%
- 부동산 합산(A+B): 총대출의 50%

2 유동성 비율을 100% 이상으로 규정 (§12조 개정)

-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(예·적금, 차입금 등) 대비 유동성자산(현금, 예치금 등) 비율*을 100%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

* 구체적인 유동성 비율 산정방식은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」에 반영 예정
- 다만, 자산총액 1,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 비율을 90%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

3 향후 계획

- 입법예고('21.7.29.~'21.9.7.) 및 관계부처 협의, 규제위 심사,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중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을 개정할 예정입니다.

※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) / 지식마당 / 법령정보 / 입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